

○ 의안제출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2년 4월 28일

발의자 : 홍상기의원의외6인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개정 (91.12.31 법률제4464호)과 동법시행령이 (92.2.15 대통령령 제13586호)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자치구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금번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의원정수 15인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에 따르는 관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의회내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 (제2조)
 - 운영위원회 9인
 - 행정재무위원회 11인
 - 시민보사위원회 8인
 - 도시건설위원회 13인
-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(제5조)
- 각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 (제6조)하되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의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.
-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(제7조제2항)
-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(제7조제3항)
-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(제11조제1항)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1호
- 지방자치법 제54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

4. 예산조치 수반 사항

- '92 추경경정예산 반영 예정

5. 개정조례안

- 별 첨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위원회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내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운영위원회 9인
2. 행정재무위원회 11인
3. 시민보사위원회 8인
4. 도시건설위원회 13인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운영위원회
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- 나.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다.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
2. 행정재무위원회
 - 가. 문화공보실, 감사실, 시민봉사실에 속하는 사항
 - 나.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다.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3. 시민보사위원회
 - 가. 시민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나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4. 도시건설 위원회
 - 가. 도시정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나.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4조 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 (이하 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위원을 겸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5조 (위원의 선임) ① 각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.

제6조 (상임위원의 임기) ①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총선거

후 처음 선임된 위원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
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 (상임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“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 1인을 둔다.

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
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
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8조 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⑤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9조 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10조 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제11조 (간사)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

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제12조 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제13조 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,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

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.